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도입〉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0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도입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0. 10.

3. 회 부 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신설

-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재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개대상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가 체납액의 납부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고, 공개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54조의2).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4조의2(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이</u>

현행	개정안
	<u>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u> <u>③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기관의 장</u>

현행	개정안
	<u>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¹⁾.

○ 그러나 현행법상 다양한 제재수단에도 불구하고,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체납액은 2,821억4,200만원에 이르며²⁾, 경찰청 소관 누적 체납 과태료도 2023년 1조 127억원, 2024년 1조 1,339억원, 2025년 1조 1,44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³⁾. 이처럼

1) 현행법 제24조: 가산금·증가산금, 체납처분
제52조: 관허사업 제한
제53조: 신용정보 제공
제54조: 감치
제55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2) 행정안전부, 「202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참고자료1]

3) 「묵은 과태료 1조 걷는다…경찰, 7월부터 체납관리관 100명 투입」, 『뉴스핌』, 2026. 6. 24.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소관 누적 체납 과태료는 2023년 1조 127억원, 2024년 1조 1,339억원, 2025년 1조 1,447억원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완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과태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국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간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명단공개 제도에 관한 입법례>

구 분	국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근거	「국세징수법」 제114조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공개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 <u>2억원</u> 이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u>1천만원</u> 이상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u>1천만원</u> 이상

- 개정안은 공개대상예정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통지일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명단 공개 제도와 유사한 절차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다만, 국세는 체납액 2억원 이상을 명단 공개 기준으로 하는 반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제도별로 공개 기준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과태료
고액체납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안이 정한 2억원의
기준금액이 적정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
- 또한 개정안은 공개 대상 정보를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명단 공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및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이므로, 공개
되는 정보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

4) <체납액 규모별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체납 현황>

(기준: 2024. 12. 31.)

체납액 규모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
1천만원 이상	9,099명	514,385건	317,168백만원
1억원 이상	490명	45,012건	133,059백만원
2억원 이상	195명	18,850건	92,432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또는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공개되는 체납정보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 이에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정보의 핵심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은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재산이 없는 등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그러나 개정안은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과태료의 합계금액에 결손처분된 과태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6) **현행법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참고로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하고, 체납자의 무재산 등으로 현재 징수가 곤란하여 정리보류한 금액은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⁷⁾.
- 이에 개정안도 과태료의 합계금액을 산정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한 과태료와 그 밖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과태료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명단 공개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이의제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7)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 따라서 개정안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라는 표현은
현행법상 과태료 불복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부합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개정안은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명단 공개 기준금액인 2억원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정보의 범위와
과태료 합계금액의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5

참고자료 1	과태료 징수율
--------	---------

(단위 : 백만원, %)

결산 회계 연도 기준	최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E=B-C-D)			(C/A)	(C/B)
					미수납액 (E=F+G)	채납액 (F)	납기 미도래 액 (G)		
2024년	577,837	966,579	656,709	616	309,254	282,142	27,112	113.6	67.9
2023년	553,583	950,467	660,060	961	189,446	272,433	17,012	119.2	69.4
2022년	512,988	846,689	603,470	1,081	242,138	228,669	13,470	117.6	71.3
2021년	503,135	804,829	567,642	906	236,281	227,570	8,708	112.8	70.5

자료 :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행정안전부